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

<table>
<tr><th colspan="4">2024년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제1차 운영위원회 정기회의</th></tr>
<tr><td>일 시</td><td>2023. 02. 06.(화) 11:00</td><td>장 소</td><td>센터 교육장</td></tr>
<tr><td>참석자</td><td colspan="3">-정*모, 조*영, 정*숙, 안*경, 김*정, 이*순, 이*호
(총7명 참석)</td></tr>
<tr><td>회의내용 및 결과</td><td colspan="3">■ 보고안건

1. 2024년 1분기 사업보고의 건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현황을 보고함.

2. 2023년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결산(안) 보고의 건
2-1. 2023년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결산(안) 보고의 건
• 총사업 세입 결산액 6,800,305,394원, 세출 결산액 5,878,090,415원에 관하여 사업 수입, 보조금 수입 및 후원금 수입 사용현황을 보고함.
• 자활매출사업비와 이월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함.

3. 2024년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 1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사유를 설명하고 총괄예산(안) 보고함.

가. 추경 편성사유
1) 2024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2) 자활근로사업비 및 기타보조금 변동 반영
3) 지정후원금 (차량구입) 수입 변동 반영
4) 이월금 결산 반영
5) 2024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변동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변동

나. 세입예산 편성사유
1) 보조금 수입
- 2024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 2024년 자활근로사업비(한시적인건비) 변동 반영
- 2024년 기타보조금(자활기금,공모사업 등) 변동 반영</td></tr>
</table>

	2) 사업 수입 - 자활근로사업 매출 이월금 결산 반영 - 사회서비스 사업비 이월금 결산 반영 3) 후원금 수입 - 지정후원금 수입 변동 반영 4) 잡수입 및 이월금 등 반영 - 기관운영비 자부담 및 후원금 이월금 결산 반영 다. 세출예산 편성사유 1) 2024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변경 반영 2) 재산조성비(차량구입) 변경 반영 3) 2024년 자활근로사업비(한시적인건비) 변동 편성 4) 지방자치 보조금사업(자활기금, 공모사업 등) 변동 편성 5) 자활근로사업 매출액(이월금) 결산 반영 6) 이월금 결산 반영 → (검토의견) 공모사업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공모 선정 이후에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음. 공모시기와 공모선정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음을 설명하였으며, 추후에는 공모선정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함. **4. 2024년 자활사업지원비 집행보고** • 2024년 1월말 기준 자활사업지원비 수입 내역과 집행 내역을 보고함. **5. 2024년 후원금 조성 및 집행보고** • 2024년 1월말기준 후원금(품)의 수입과 집행 내역을 보고함 **■ 심의안건** **1. 북구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개정의 건** • 운영규정 17차 개정사유를 설명하고 개정안을 보고함 가. 개정 사유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자활사업안내 지침 변경에 따름 나. 주요변경 내용 1) 운영위원회 심의 및 보고사항 명확화 2) 임・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명시

	3) 연차 보상 규정 명시 4) 차량 구입 및 매각 규정 수정 5) 기록 유지관리 기간 명시 → (검토의견) 제34조의 임직원 겸직금지 의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안내의 겸직허용 조항과 배치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으나, 정당한 사유 또는 소속상관의 허가와 지자체 승인이 있을 경우 타 업무와 겸직이 가능하고 자활사업안내 지침의 문구를 반영한 것이므로 수정 없이 승인하기로 함. → (검토의견) 제43조의 연차보상규정 중 기관의 귀책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나, 자활사업안내 지침의 문구를 반영한 것이므로 수정 없이 승인하기로 함. **→ (심의결과) 참석위원 6명 전원이 원안대로 승인함.**
정책 건의	